

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의안
번호

415

제출연월일 : 2006년 4월 1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을 육림사업부지로 활용하였으나 국유림제도의 시행중단으로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
- 분수국유림을 반환하면서 수익분배한 수익금으로 도유림과의 집단화 및 경제림 조성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입, 공유임야를 확대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□ 재산의 취득

《 공유임야 확대 조성 》

- 위 치 :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번지 등 8개 지역
- 재산규모 : 1,918,023m²(191.8ha)
 -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 21.0ha
 -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27-1 16.5ha
 -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산14-1 25.4ha
 -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12 6.0ha
 -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1 3.1ha
 -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산38-1 38.6ha
 -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산27 48.5ha
 -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산28 11.9ha
 -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산7-1 20.8ha
- 사업기간 : 2006. 4 ~ 12(9개월)
- 사 업 비 : 2,079백만원(도비)

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재산취득	재산처분	출자취득	출자처분	비 고
계	2,079,000	-	-	-	
○ 공유임야 확대조성	2,079,000				

4.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 첨
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□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m²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,성명	비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1 건	1,918,023.00	2,079,000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1	토지	8필지	1,918,023.00	2,079,000	2006	분수 국유림 수익 분배금 으로 공유임야 확대 조성	매 입 최 정 현 김 길 자 최 진 중 분지마을회 김 영 기 송 영 식 최 순 영 연 규 화 신 만 수	
		- 괴산 청안 부흥 산46	209,851.00	300,000				
		- 괴산 연풍 적석 산7-1	164,679.00	227,000				
		- 청원 미원 옥화 산4-1	254,678.00	194,000				
		- 괴산 연풍 분지 산12	60,198.00	59,000				
		- 제천 백운 운학 산1	30,545.00	22,000				
		- 괴산 연풍 갈금 산8-1	386,039.00	450,000				
		- 제천 수산 대전 산27	484,562.00	388,000				
		- 제천 수산 대전 산28	119,504.00	95,000				
	- 충주 양성 지당 산7-1	207,967.00	344,000					
건물								
기타	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관 계 법 령 발 취

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	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
<p>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.</p> <p>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35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</p> <p>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 건물,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, 그 밖의 취득)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, 그 밖의 처분)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p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)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)을 말한다. 토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</p> <p>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)</p>

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 2 ~ 5호 생략